

내부통제 규정

제 정: 2001. 8. 30.

개정(1): 2011. 12. 27.

전면개정: 2016. 10. 31.

개정(3): 2018. 2.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직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회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행위는 그 위임받은 업무 범위내에서는 이를 회사의 업무행위로 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통제”란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련의 통제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3. “내부통제규정”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고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규정 및 절차를 말한다.
4. “준법감시”란 내부통제의 일부분으로서 회사 임직원의 직무 수행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거나 법규 위반행위를 신속히 발견하도록 하는 사전적·상시적 통제 과정을 의미한다.
5. “준법감시체계”란 내부통제체계의 일부분으로서 효과적인 준법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6. “준법감시인”이란 내부통제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7. “법령”이란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내부통제 운영원칙) 회사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의 기능적 분리, 책임의 명확화, 회계자료의 적정성 및 신뢰성 확보, 이중관리, 상호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신상품등 새로운 업무를 개발 또는 취급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적정여부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감독규정 등이 변경될 경우 관련 내용을 신속·적절하게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내규를 제·개정할 때에는 제1항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내부통제 조직 및 역할

제6조(내부통제 조직) 회사의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다.

제7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의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②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하고 내부통제규정, 내부통제체계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8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내부통제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의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직구조 등을 구축·확립하는 등 내부통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직접 또는 준법감시인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준법감시인)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사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규정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및 내부통제규정 준수 매뉴얼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임직원)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 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내규(이하 “법규”라 한다)를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조직·업무를 관리하는 임직원은 소관조직·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수행 시 준수절차) 회사는 임직원이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내규 등으로 문서화하고 동 내규 등의 내용이 임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체제 운영

제1절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조직

제12조(준법감시인의 임면) ①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의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 임면시 관련 사실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석 발생시 지체없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준법감시인의 지위 및 임기) 회사는 관계법령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2년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내부통제규정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게 대한 관련자료 및 정보 제출 요구
3. 내부통제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사
4. 내부통제규정 준수 관련 문제점 및 미비사항에 대해 경영진 또는 관련부서에 시정 요구
5.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감사 앞 제재 의견 표명
6. 위법사항 등(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에 한한다)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7. 필요시 이사회 등 모든 업무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
8.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9.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준법감시부서) 회사는 준법감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능력 등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준법감시부서”)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규정의 준수여부 점검업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가 수행하는 본질적 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3. 그 밖에 이해상충의 발생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에 전념하기 어려운 업무로서 관련 법규에서 겸직을 금지한 업무

③ 준법감시인이 제2항 각 호 이외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절 준법감시체제 운영

제17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① 회사는 임직원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

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내부통제규정 준수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
2.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사전검토 및 정정 요구
3. 법규준수, 행정지도 등 관련 임직원 교육 및 자문
4. 감독당국, 검사부서 및 유관부서에 대한 협조·지원

제18조(내부통제규정 준수여부 확인절차 및 방법) ①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체제를 통해 임직원의 내부통제규정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준법감시인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검토)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해 법규 준수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필요시 정정 요구 등을 통해 법규 위반을 방지하여야 한다.

1. 정관·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
2. 이사회 부의사항(감사위원회 부의사항 제외)
3.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
4.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나 문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5.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준수, 행정지도 등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임직원 교육) 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 행정지도 등과 관련하여 정기·수시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내부통제규정 위반 시 처리)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한 경우 감사에 보고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타 조직과의 협조) 준법감시인과 감사는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규정 준수여부 점검 계획 및 감사의 검사계획 수립시 상호간의 관심사항이 이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조정하는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내부통제 관련 회사(임직원)의 준수사항

제23조(임직원의 의무)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가 제정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고객,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위반 등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및 개인·신용정보를 누설, 제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회사의 고유정보 및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사 이용자의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국가,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 회사 이용자를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 관련) ①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겸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5.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및 내부통제규정에 위배는지 여부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신상품 개발등의 업무절차) ① 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품 기획·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2. 상품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3. 상품 판매 이후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제26조(이해상충 관리방법 및 절차) ① 회사는 업무수행 시 회사와 회사이용자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 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광고) ① 회사는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9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과도한 채무 또는 경고문구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회사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회사상품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부수업무 관리) ① 회사는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의2(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①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를 마련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신원사항 확인
2.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제5장 보칙

제29조(고위험사무 직무분리기준) 회사는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서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직무분리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부족이나 사안의 시급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분리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별도의 보완통제 장치를 마련하여야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정보전달체제) ① 회사는 임직원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회사의 비전과 전략,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 및 공유되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전달 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1조(부서 등 자체점검) ① 회사는 각 부서의 업무가 법규에 맞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여부를 해당 부서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점검(“자체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자체감사의 방법, 확인사항,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내부고발제도) ① 회사는 내부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총괄하는 자를 지정하고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은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명령휴가) 회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34조(내부통제규정의 제·개정) ① 회사가 내부통제규정(제35조에 따라 마련된 세부

지침 등은 제외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단순한 조직체계의 변경, 기타 체제 변경이나 자구수정 등 내부통제규정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회사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제35조(세부지침 위임) 이 규정의 시행 및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면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내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준법감시인 운영기준」은 폐지한다.

부칙(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